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가단6850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마준석, 박영재, 정지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변론 종결 2020. 4. 21

판결 선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867,629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 9. 10.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납품대금은 264,000,000원으로 정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소외 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E 조경공사' 중 '4공구 조경공사'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2. 22.경 소외 회사에게 조형물을 모두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 9. 23.부터 2016 . 3.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합계 66,씨0,000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미지급공사대금 채권 중 105,732,3기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현재 소외 회사의 사 내이 사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5호증,을 제 8내지 10호증의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소외 회사는 발주자로부터받은 대금 중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소외 회사는 이를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91,867,62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상법 제401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2004다26119판결 등 참고).

나. 갑 제3호증, 을 제11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래부터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대금 미지급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횡령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발생한 대금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이행지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달리 위 채무의
이행지체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약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정훈